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 소 윤

2023년 8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상 미

강 소 윤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강소윤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남 진 열 
위 원 고 관 우 
위 원 김 상 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3년 8월

The Effect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s Role Stress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on the Intention to Report

So-Yu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Sang-Mi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
2. 용어의 정의	0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07
1. 아동학대	07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12
3. 역할스트레스	19
4. 아동학대 인식	24
5. 아동학대 신고의도	27
6. 주요 변인 간 선행연구 고찰	28
III. 연구방법	31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31
2. 연구대상	33
3. 측정도구	33
4. 분석방법	38
IV. 연구결과	39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2. 주요 변수 기술통계분석	42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분석	43
4. 상관관계분석	57
5. 다중회귀분석	60

V. 결론 및 제언	62
1. 연구요약 및 결론	62
2. 제언 및 한계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4
<부록> 설문지	77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사례 건수	11
<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4
<표 3>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및 신고건수	15
<표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국내 연구동향	17
<표 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33
<표 6> 역할스트레스 신뢰도	35
<표 7> 아동학대 인식 신뢰도	36
<표 8>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뢰도	37
<표 9>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10> 신고의무제도 관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11> 주요 변수 기술통계분석	42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분석	43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차이분석	45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보호성 차이분석	47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갈등 차이분석	49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	52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	53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분석	55
<표 16> 주요 변수 상관관계분석	59
<표 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6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 소 윤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 상 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역할 갈등, 역할보호성, 일-가정갈등), 아동학대 인식(심각성, 신고 저해요인),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검증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 257건을 배포하였고 이 중 기타 직군에 해당하는 16건의 설문지를 제외한 241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ver.2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대와 직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와 신고의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고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복이나 비난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부담감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바람직하고 어려운 행위가 아님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김수정, 2012).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박미숙, 2020).

「아동복지법」 제3조의 규정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다(국가법령정보, 2023).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기능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 아동의 성장과 사회생활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송준화, 2007). 아동학대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성장기 내내 잠재되어 있어 평생을 거쳐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차영숙·문혜련, 2009). 또한 영유아기는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며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때 학대가 이루어지면 불안 증세, 사회 부적응,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소영, 2021).

최근 제주도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등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21년 제주 피해 아동 발견율은 6.5%로 전년도(4.8%)보다 증가하여 국내 평균(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 전북, 전남을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22). 제주의 경우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20년 562건, 2021년 747건으로 전년 대비 32.9% 늘었다(보건복지부, 2022). 경제 위기,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 내 아동보호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입거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장준혁, 201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2,251건, 2021년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6%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22).

과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이거나 부모의 자녀 훈육으로 생각하여 국가와 주변의 개입이 소극적이었다(정웅석, 2014; 김수인, 2017). 또한 대부분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피해 아동은 본인이 아동학대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가해자인 부모를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정미영, 2017). 이처럼 피해 아동의 의사 표현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조기 발견과 신고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김리원, 2021). 2021년 조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83.7%(31,486건)가 부모에 의한 학대이며, 그중 96%가 친부모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친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신고로 인한 가족 해체가 두려워서’, ‘양육은 부모의 권리여서’ 등의 이유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신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김명성, 2021).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정현대, 2022). 양육의 1차 책임자인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형성되었다(채윤경, 2016).

아동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2000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 조치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를 마련하였다(장준혁, 2019). 신고의무제도는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신고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의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장준혁, 2019).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기 수월한 직업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서비스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라고 볼 수 있다(마지순, 2019).

2020년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 직업군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28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020년에는 전국기준 28.2%에 그쳤으나 2021년 44.9%로 늘었으며 제주의 경우에도 2020년 19.2%, 2021년 41.6%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가 언론 매체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아동학대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송준화, 2007).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44.9%로 여전히 저조하였고(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선진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66.7%인 반면 우리나라는 28.2%에 그쳤다(U.S. Department of Health&Human Services, 2020). 국내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나 체감도 등 개인적인 요인이 신고의도나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12). 아동학대 신고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마다 성별, 근무기간,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교육 참여 횟수 등 다양한 요인이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채윤경, 2016).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 부담, 근무 조건의 열악함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이로 인한 사기저하, 이직문제와 더불어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신용숙, 2016). 보육교직원들이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김정자, 2014). 이에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수월한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신고의도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유기와 방임” 이라고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 2023). 또한 눈에 보이는 상처나 상해를 입히는 보호자의 행위,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무관심, 부적절한 행동, 물리적인 지원을 연기하거나 상처를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은재, 2018).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지정된 28개 직군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 202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박동연, 2012).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이 공통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 중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역할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일-가정갈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김민정, 2012). 역할갈등은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주어진 경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자 할 때 그와 상충하는 다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홍주연, 2021). 역할모호성은 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지각된 불확실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를 의미한다(김민정, 2012). 일-가정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을 말한다(이윤정, 2020).

4)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설명된다(김수정, 2012).

똑같은 상황이라도 양육태도나 체벌에 대해 사람마다 용인의 정도가 다르다(김준미, 2006).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는지를 말한다(김수인, 2017).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신고를 귀찮게 여기는 정도,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책임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말한다(채윤경, 2016).

5)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후 실제 신고행동을 결정하도록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신고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채윤경, 2016). 즉, 미래에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과정이다(김리원, 202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영옥, 2005).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여러 학자, 시대적 흐름과 배경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한주연, 2020).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빌어 사용되었다(장인순, 2017). 이때는 범위와 기준에 대한 교정이 용이하고 과학적인 연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김숙희, 2017). 현재는 아동학대가 시대, 사회,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국가나 연구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한소영, 2022).

Fontana(1970)는 ‘부적절한 아동 취급 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박탈, 방임, 영양부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행위를 아동학대 범위에 추가시켰으며, Gil(1970)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설명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다(Fontana, 1970; Gil, 1970; 한주연, 2020). 이처럼 아동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정의는 없다(조민선,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의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의미의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임을 분명히 하였다(장준혁, 2019). 만 18세 미만 대상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 유기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그 대상과 의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주연, 2020).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학대 행위의 형태, 의도성, 범위, 학대로 인한 가지적 손상 유무, 학대 부위, 학대 빈도, 지속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다(김숙희, 2017). 협의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행위로 대표적 유형인 신체학대에 한정하여 설명되며 1960년 Kempe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을 발견하면서 보고되었다(김수인, 2017). 광의의 정의는 보호자나 양육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적 가혹행위에 의한 유기와 방임 등을 말한다(김숙희, 2017). 즉, 아동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과 잠재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숙희, 2017).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무관심, 상처나 상해의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의도적인 태도, 물리적인 지원을 연기하거나 상처를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은재, 2018). 초기에는 때리고 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가 논의의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방임이나 거친 말에 의해 상처받는 심리적 학대도 학대의 일종으로 고려되었고, 1980년대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도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양명자, 2015).

이처럼 ‘신체학대 - 방임 - 정서학대 - 성학대’ 순서로 학대의 개념이 확대되어 왔다(문영희, 2011; 양명자, 2015).

2) 아동학대 유형

2021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발생 건수는 정서학대(32.8%) - 신체학대(15.4%) - 방임(7.4%) - 성학대(1.7%)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 때리기, 흔들기, 물기,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모두 신체학대에 해당되며 이는 상처 자국, 골절, 흔적 등 신체적 징후나 위축적인 태도와 같은 행동적 징후를 초래한다(김수인, 2017). 눈으로도 가장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이며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박동연, 2012).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차별, 멸시, 증오, 위협 등을 행하는 것으로 심리적 영향을 줄 뿐 신체적 학대처럼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김숙희, 2017). 정서학대는 단일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3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부족하고 외롭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선우진희, 2016).

(3) 성학대(Sexual Abuse)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 즉, 아동의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로 성인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 추행 등을 말한다(선우진희, 2016). 성학대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며, 국내에 보고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주로 주변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특징이 있다(박동연, 2012).

(4) 방임(Neglect)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아동이 피할 수 있던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선우진희, 2016). 이는 부모에 의해 인지되지 못하고 행해지는 학대의 유형으로(박동연, 2013) 장기적으로 악역향을 끼치는 특성이 있어 신체·정서적 손상, 또래 관계 문제, 학교 부적응 등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숙희, 2017). 발달이나 신체 건강 측면에 어려움을 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선우진희, 2016).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일차적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 등 아동 발달의 전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김영옥, 2005)하여 진행하였다.

3) 아동학대 현황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현황 및 발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하며 그중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아동학대 의심사례라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로 분류된다. 2021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포함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53,93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52,083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6%를 차지하였다.

<표 1>과 같이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도 42,251건보다 11,681건 늘어 약 27.6%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에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나 진술이 뒷받침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건수 역시 전년도 30,905건 대비 약 21.7%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52,083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약 72.2%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접수	34,169	36,417	41,389	42,251	53,932
아동학대 의심사례	30,923 (90.5%)	33,532 (92.1%)	38,380 (92.7%)	38,929 (92.1%)	52,083 (96.6%)
아동학대 사례	22,367 (72.33%)	24,604 (73.37%)	30,045 (78.28%)	30,905 (79.39%)	37,605 (72.2%)

출처: 보건복지부(<http://mohw.go.kr>)(2021.12. 기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제도는 미국이 1968년에 신고법을 제정한 것에 비해 훨씬 늦게 시작되었다(조옥순, 2010).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전세희, 2020).

2011년 8월 신고의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신고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처벌규정 등을 보완하였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 직군에서 23개 직군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장준혁, 2019).

그 후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며 학대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의 요구와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었다(김수인, 2017). 아동학대와 관련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였다(한소영, 2022).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학대에 대한 징벌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을 내용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장준혁, 2019). 2023년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28개 직군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국가법령정보, 2023).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학대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조옥순, 2010).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전 국민의 신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 2023).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의 신고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를 둔 이유는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김준미, 2006).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2000년 개정법에서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놓고 있다. 초기 신고의무 직종은 7개 직종이었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는 22개 직종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 12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추가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어린이집 평가 업무종사자 등이 추가 지정 되어 2023년 현재 <표 2>와 같이 28개 직군이 지정되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정부는 지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 2023).

<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구분	법령	신고의무자
의료인 직군	의료법	의료인·의료기사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직군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직원·강사
	초·중·고 교육법	초·중·고교 직원
	학원법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아동복지법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사업법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입양특례법	입양기관 종사자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
	소방기본법	소방구급대원

출처: 국가법령정보(2023.02. 기준)

그러나 <표 3>과 같이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23,372건)는 전체 신고 건수(52,083건)에 44.9%에 지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2).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2019년 23.0%, 2020년 28.2%, 2021년 44.9%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저조한 편이다.

2021년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4.4%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초·중·고교 직원 11.6%,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1.1%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표 3>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및 신고건수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6,065	11.6	아동본인	8,966	17.2
의료인·의료기사	549	1.1	부모	10,631	20.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02	1.3	형제·자매	657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	0.1	친인척	786	1.5
보육교직원	241	0.5	이웃·친구	3,660	7.0
유치원교직원·강사	216	0.4	경찰	243	0.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5	0.1	종교인	23	0.0
소방구급대원	36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39	0.5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1	0.0	의료사회복지사	32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6	0.0	낮선 사람	1,138	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79	0.2	익명	729	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30	0.4	법원	103	0.2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5	0.1	기타	1,504	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493	14.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097	2.1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	5,785	11.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54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3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9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46	0.1			

응급구조사	3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12	0.4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117	0.2			
아이돌보미	26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139	0.3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0	0.0			
입양기관 종사자	6	0.0			
소계	23,372	44.9	소계	28,711	55.1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확대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의무 태만 시, 이에 대한 벌금형, 금고형, 면허 취소 등의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박동연, 20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된다(국가법령정보, 2023).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금지), 제13조(신변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국가법령정보, 2023)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본 결과 <표 4>와 같이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의료인이 공통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 28개 직군 중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국내 연구동향

연구자	연구대상
윤여복 (2002)	초중고 교사(N=82), 보육교직원(N=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51) 의료인(N=35), 사회복지전담공무원(N=20)
이현희 (2003)	초중고 교사(N=57), 보육교직원(N=52), 의료인(N=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22)
서윤경 (2004)	의료인(N=6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58), 보육교직원(N=55) 초중고 교사(N=51), 사회복지전담공무원(N=40), 기타(N=7)
차은민 (2006)	초중고 교사(N=7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70), 의료인(N=69) 사회복지전담공무원(N=68)
김준미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N=39), 초중고 교사(N=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28), 의료인(N=27)
조옥순 (2010)	초중고 교사(N=161), 사회복지전담공무원(N=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N=54), 의료인(N=42)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 교사는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 매일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대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김수정, 2012). 학교는 학령기 아동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교사들은 부모를 제외하고 아동들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조옥순, 2010). 따라서 초중고 교사는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 발견, 보호와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김준미,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 주민들과 쉽게 접하고 가구 방문에 있어 접근성이 커서 학대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하는 등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조옥순, 2010).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생활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김준미, 20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김준미, 2006). 직접적으로 가구 방문을 하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숨어있는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어 조기개입이 가능하다(조옥순, 2010).

보육교직원은 아동의 행동과 개개인의 요구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장인순, 2017).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환경을 살펴볼 수 있어 학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영유아 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윤귀진,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역할스트레스

역할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말한다(김세은, 2020). 역할은 개인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이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 역할이란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최경진, 2018). 하지만 역할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이선규, 1991; 최경진, 2018).

일반적으로 스트레스(stress)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해로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이라고 정의된다(김경화, 2015). 스트레스는 과다해지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의학적 질병과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불안, 퇴행 등과 같은 정신적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양안숙, 2008). 이러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온다(유기현, 2006). 스트레스는 경쟁과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에서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김종배, 2022).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로 주변 환경 요구에 응할 수 없거나 개인의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환경의 부적합으로 정의된다(김민재, 2022).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조직특성, 직무특성, 조직구성원들의 역할과 대인관계 등이 있다(장희정, 2023).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역할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일-가정갈등 등), 직무특성요인(업무난이도, 업무량 과다 등), 사회적 요인(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물리적 요인(작업환경 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김종배,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역할요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역할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개념으로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증가한 업무와 책임의 요구에 대응하며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김민재, 2022). 직무를 수행함에 작업자의 기대가 전달자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을 때, 서로 원하는 역할이 다를 때, 조직 내 역할의 명확성이 떨어질 때,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과하게 느꼈을 때 생기는 신체적·심리적 반응으로 개인과 집단에 의해 발생한다(이현숙,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 만족도를 낮추며 이직 의도를 높인다(최혜민, 2016).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업무와 역할에 대한 요구들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장시간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된다(김세은,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직무수행, 보육 아동과의 관계,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김혜정, 2019). 유현숙(2013)의 연구에서도 학부모와의 관계 및 환경관련 요인이 이들의 직무 소진이나 교사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교사 행동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유현숙, 2013; 신용숙, 2016).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현장에서 그들의 역할 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김정자, 2014). 정채옥(2002)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의 역할스트레스로 인하여 교사 효능감이 저하되고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들로 인한 아동학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와 같은 스트레스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되었다(김미원, 2015).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또는 조직 관련 요인은 직무자체, 동료관계, 근무시간, 보수 등이 있다(도명애, 2010).

역할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구성요소는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역할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유발요인들을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일-가정갈등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김민정, 2012).

1) 역할갈등(Role Conflict)

갈등(conflict)이란 집단 간이나 집단 내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사고방식, 가치관, 견해 등이 서로 상충될 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다(장순정, 2021).

역할갈등은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으로써 그와 상충하는 다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홍주연, 2021). 또한 주관적으로 지각한 역할과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할기대가 불일치하여 역할행동의 원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김보수, 2012).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들로부터 서로 양립하기 힘든 업무를 맡게 되거나 주어진 역할 기대에 조직 구성원 개인의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역할갈등이 존재한다(김민재, 2022). 이러한 역할갈등 현상은 조직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직위와 직무가 세분화되어 역할 전달자와 역할 수행자 간에 인적 요소인 개성이나 정서적인 감정 교류가 무시됨에 따라 심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한국주, 2016). 특정 직무에 연결되어 있는 행동을 역할행동이라고 하며 그 역할행동이 자신의 신념과 다른 경우나 개인의 상호 모순된 역할기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역할을 행할 것인가의 갈등에 빠지게 될 때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김민정, 2012). 역할수행자의 역할 기대와 타인에 의해 주어진 역할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역할수행자는 맞지 않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적 갈등이나 직무 긴장이 높아져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상사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게 된다(정승언, 2002). 이러한 역할갈등을 겪는 수행자는 주어진 역할에 대한 요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역할갈등으로 인해 생긴 불안감과 좌절감을 다루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비합리적으로 소모하게 된다(김종배,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기 확신과 성과가 낮아지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김민정, 2012).

본 연구에서의 역할갈등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 압력이 존재할 때 하나의 역할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홍주연, 2021).

2)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직무수행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김민재, 2022). 조직 구성원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역할모호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미원, 2015). 또한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을 인지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모를 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 간 충돌할 때에도 역할모호성을 느낀다(이성배,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할모호성은 역할수행자의 이해와 범위를 능가하는 현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고 크게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김민정, 2012). 즉, 개인의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 및 복잡성, 빠른 성장, 사회구조적 요구에 의한 빈번한 기술의 변화 등이 역할모호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곽신근, 2010).

정보의 불충분, 목표나 성과의 불명확, 역할 자체에 대한 모호성 등이 직무만족을 낮추며(이혜수, 2017) 각종 질병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한국주, 2016). 반대로 역할이 명료할수록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무긴장과 이직 경향을 낮춘다(이혜수, 2017). 즉, 역할모호성은 조직몰입 저하, 직무불만족, 직무소진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홍숙, 2021). 자기 자신의 의무, 권한, 책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역할모호성을 높게 느끼는 구성원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저하된다고 보았다(김민정, 2012).

본 연구에서의 역할모호성은 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지각된 불확실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를 의미한다(김민정, 2012).

3)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최근 우리사회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른 가족 친화적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역할과 가정 내 역할이 상충하여 생기는 일-가정 갈등이 존재한다(정규형·류주현, 2020).

사람은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로 한계를 느끼고 결국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역할과중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최선아, 2018). 따라서 일-가정갈등은 일과 가족 영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이 몇 가지의 측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윤정, 2020). 최근 직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민정, 2011).

일-가정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전이이론으로 개인이 한 영역에서 영향 받은 느낌, 태도, 행동 등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최선아, 2018). 이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로 구분하며, 직장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이 직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일-가정갈등은 불안감 같은 심리 증상 또는 소진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자신의 직무나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정규형·류주현, 2020). 일-가정갈등이 심할수록 조직몰입은 낮고 이직 의도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등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련·임정희, 2001; 장재윤, 2004; 김민정, 2012).

본 연구에서의 일-가정갈등은 직장내와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역할 간의 갈등을 말하며 직장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느낄 때를 의미한다(이윤정, 2020).

4.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가 한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일 수 있다는 생각과 신고 후 신고자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 아동학대 인지가 바로 신고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없다(김지운·김용덕, 2019).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다(김진선·박경숙, 2005).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김수인(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지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매개한다고 하였고, 황인옥(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뿐만 아니라 신고 지식,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박미경과 김현주(2018)의 연구에서도 관련 인식, 지식, 행위 통제력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장애물에 대한 인식,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신고로 인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미칠 긍정·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김수정,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신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혹은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저조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서윤경, 2004).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은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를 개인의 지각과 동기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다(조옥순, 2010). 이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Rosenstock, 1974; 김현옥, 2013). 건강신념모델을 아동학대 문제에 접목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는 사회적 문제의 요소로 간주된다(김현옥, 2013).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김수인, 2017).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의 네 가지 구성요인 중 지각된 심각성은 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신고행동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Feng et al. 2005; 김수인, 2017).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을 준비하는 학생과 타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보육교직원을 준비하는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김리원, 2020).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수준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리원, 2020). Ashton(1999)의 연구에서는 체벌의 용인 정도가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이라는 매개요인을 거쳐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shton, 1999; 조옥순, 2010).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의 증상과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김현옥, 2013). 신체학대와 같은 눈에 보이는 학대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심각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낮다(노충래·정익중·전종철·김정화, 2012).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현옥,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동적, 정서적 증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nshaw·Lichtenberg, 1995; 김준미, 2006).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를 목격하여도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신고의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김수인,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차은민, 2006).

2)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의 네 가지 구성요인 중 지각된 장애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김수인, 2017).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이란 신고를 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게 귀찮다는 인식,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아동학대나 체벌은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 등이 있다(Liu & Lau, 1999; 채운경, 2016).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라도 신고 후의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크다면 신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Feng et al, 2005; 김수인, 2017). 또한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했음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가 낮아 신고하지 않는다(김준미,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고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장인순, 2017) 아동학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 부모의 보복과 신고 후 부가될 책임과 조사 과정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서운경, 2004).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부모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서 부담스럽다’ 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조옥순, 2010). 우리나라같이 아시아권에 속한 경우 전통적으로 체벌을 자녀의 훈육 수단으로 생각한다. 가정 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대부분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가정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타인이나 사회적 개입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한다(박혜영, 2009).

즉,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련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 또는 불이익에 대한 생각이 크거나 부모의 양육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신고를 꺼려하게 된다(차은민, 2006).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운경, 2004; 김준미, 2006).

5. 아동학대 신고의도

개인의 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김수인, 2017). ‘의도’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뜻하며 행동하기 위해 자각하는 계획의 강도를 의미한다(김경화, 2018), 즉, ‘신고의도’란 신고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준비 정도를 말하며 추후 신고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다(박미숙, 2020). 신고의도를 통해 미래의 신고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신고의도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리원, 2021).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행동’은 과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반면 ‘신고의도’는 향후에 신고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미래의 신고행동을 현재의 신고의도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채윤경, 2016).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후 실제 신고행동을 결정하도록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고행동이 일어났다면 그 주체는 신고의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김수인, 2017).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미래의 신고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서윤경, 2004).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고혜인, 2020). 김성봉(2019)과 고혜인(2020)은 아동학대 해석수준에 따른 신고의도의 차이를 보았으며, 김수인(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지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최경일(2011)은 신고에 대한 자신감과 아동학대 증거의 정도가 신고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박미경과 김현주(2018), 김현옥(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인식, 지식, 신고 효과성, 행위 통제력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강상과 유수정(2014)은 아동학대 신고지식,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등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등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연구되었다(고혜인, 2020).

6. 주요 변인 간 선행연구 고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앞서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1)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신고의도

보육교직원의 역할스트레스는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행동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유현숙, 2013; 신용숙, 2016). 정채옥(200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15.5%가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면 정서학대나 성적학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아 ‘신고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학부모와의 관계 등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욱·채신영, 2021). 또한 직무 중요도 및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의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신용숙, 2016).

이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김수정, 2012).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체벌에 대한 허용 정도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매개 요인을 거쳐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200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하였다(이현희, 2003).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사례에 제시된 행동적, 정서적 증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은민, 2006). 이처럼 아동학대 심각성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인식하는지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허남순, 2003; 유수정, 2014; 박미경·김현주, 2018; 김리원,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의 정도가 1단위 상승할수록 신고의도가 2.3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김현주, 2018). 허남순(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45.8%가 자신이 발견한 사례를 ‘신고할 정도로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였다고 응답하였고,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8.1%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보육교직원 중 41.3%가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한 데 비해 신고의도가 없는 보육교직원 중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27.2%에 불과하였다(정원주, 2009).

(2)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90%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3.3%에 지나지 않았다(김연희, 2001). 조사대상자들은 ‘아동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신고절차와 방법 등 정보를 몰라서’,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신고 후 부가될 책임과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 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로 인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자신

에게 미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김수정, 2012).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이유를 물었을 때 ‘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신고 후 여러 절차가 부담스러워서’, ‘신고자의 신변 노출이 두려워서’, ‘신고 절차를 잘 몰라서’ 라고 응답하였다(박혜영, 2009).

이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다양한 저해요인들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역할스트레스(역할갈등, 역할보호성, 일-가정갈등), 아동학대 인식(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역할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 심각성과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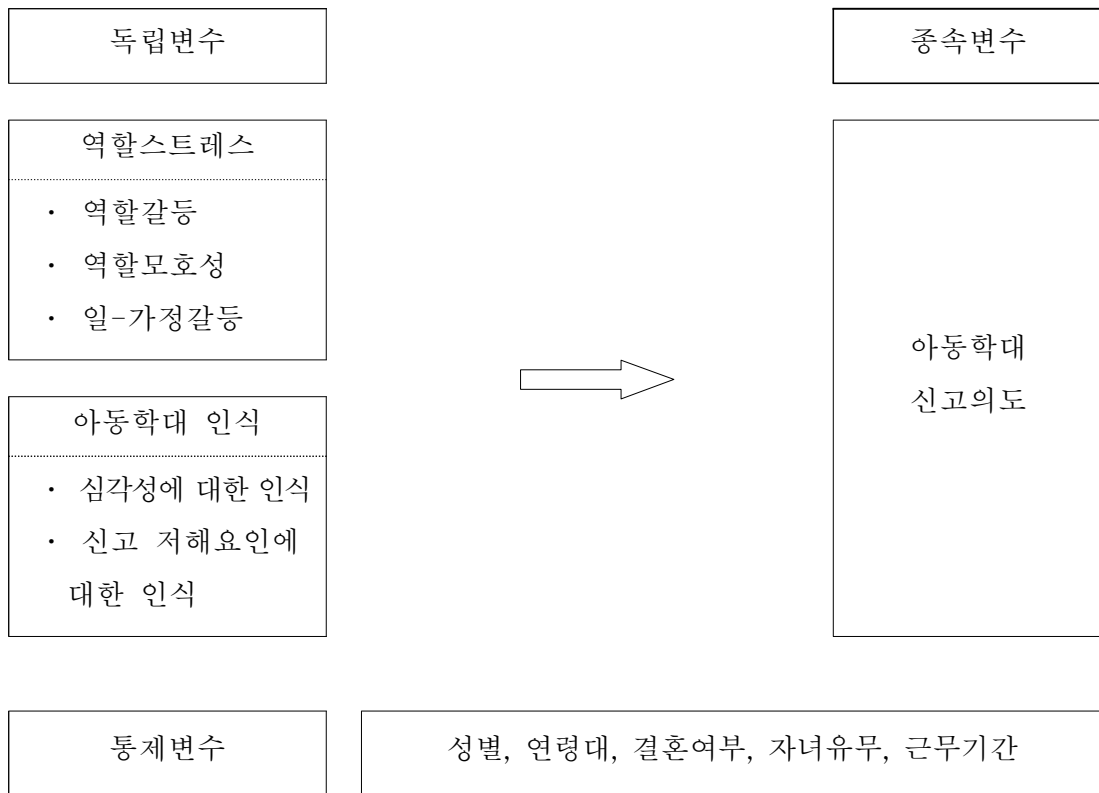
가설 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2.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신고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 중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023년 1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총 257명이었다. 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에 해당되지 않은 4부와 기타 소수 직업군 12부를 제외하고 241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ver.2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 <표 5>와 같이 크게 5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설문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근무기간	6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제도	4
	교육 참여 경험, 예방교육 필요 여부	2
		6
역할스트레스	역할갈등	5
	역할보호성	4
	일-가정갈등	5
		14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11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10
		21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7
	총	54

1) 독립변수: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인식

(1)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일-가정갈등’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역할갈등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 압력이 존재할 때 하나의 역할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의미한다. 역할모호성은 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지각된 불확실성으로 정의되며 일-가정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서로 상호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ould(1979)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김민정(2011)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역할갈등 5문항, 역할모호성 4문항, 일-가정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선행연구인 김민정(2011)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 α = .75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938이었다. 하위변인인 역할갈등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52, 역할모호성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78, 일-가정갈등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57로 나타났다.

<표 6> 역할스트레스 신뢰도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선행연구	본 연구
역할갈등	1, 2, 3, 4, 5	5	.744	.852
역할스트레스	역할보호성	6, 7, 8, 9	.743	.878
	일-가정갈등	10, 11, 12, 13, 14	.773	.957
전체		14	.753	.938

(2)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본 연구의 또 다른 독립변수 중 하나인 신고의무자의 인식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척도는 서윤경(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심각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심각하다 4점, 매우 심각하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척도는 장인순(2017)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행연구인 서윤경(2005)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 α=.78이었으며 장인순(2017)의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82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37,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93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학대 인식 신뢰도

	설문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선행연구	본 연구
아동학대 인식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 11	11	.78	.837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1 ~ 10	10	.82	.893

2) 종속변수: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로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한 후 신고의도를 묻는 것으로 Feng(2003)이 개발하고 김수인(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2문항, 정서학대 2문항, 성학대 1문항, 방임 2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선행연구인 김수인(2017)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Cronbach' α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48이었다.

<표 8>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뢰도

설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선행연구	본 연구
	신체학대	1, 2		
아동학대 신고의도	정서학대	3, 4		
	성학대	5	.82	.848
	방임	6, 7		
전체		7		

3) 통제변수: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근무기간 등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대 등 총 6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조옥순(2010), 양리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중에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ver.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인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 총 6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조사대상자 총 241명 중 여성은 142명(58.9%), 남성은 99명(41.1%)이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8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2명(29.9%), 40대 49명(20.3%), 50대 이상 35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128명(53.1%)이고 기혼자가 113명(46.9%)이었으며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는 155명(64.3%) 자녀가 있는 자는 86명(35.7%)이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95명(3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초중고 교사 62명(25.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1명(25.3%), 보육교직원 23명(9.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 5년 미만이 89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 10년 미만 75명(31.1%), 10년 이상 57명(23.7%), 1년 미만 20명(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집단	빈도(명)	비율(%)
성별 (n=241)	남성	99	41.1
	여성	142	58.9
연령대 (n=241)	20대	72	29.9
	30대	85	35.3
	40대	49	20.3
	50대 이상	35	14.5

결혼여부 (n=241)	미혼	128	53.1
	기혼	113	46.9
자녀유무 (n=241)	없음	155	64.3
	1명	24	10.0
	2명	52	21.6
	3명 이상	10	4.1
직업 (n=241)	초중고 교사	62	25.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1	2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5	39.4
	보육교직원	23	9.5
근무기간 (n=241)	1년 미만	20	8.3
	1년 이상 ~ 5년 미만	89	36.9
	5년 이상 ~ 10년 미만	75	31.1
	10년 이상	57	23.7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와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241명 중 224명(92.9%)이 신고의무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 중 177명(73.4%)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18명(7.5%)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최근 1년간 신고의무자 교육에 1번 이상 참여한 자는 180명(74.7%)이고 참여하지 않은 자는 61명(25.3%)이었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81명(33.6%)은 신고의무제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 필요도에 대해서는 129명(53.5%)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33명(13.7%)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으며 그 중 26명(78.8%)이 목격 시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신고의무제도 관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집단	빈도(명)	비율(%)
신고의무제도 인지여부 (n=241)	모름	17	7.1
	알고있음	224	92.9
신고의무제도 인지경로 (n=224)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	36	14.9
	인터넷	11	4.6
	아동학대 세미나 및 교육	177	73.4
본인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n=241)	모름	18	7.5
	알고있음	223	92.5
신고의무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n=2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8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2.9
	그저 그렇다	50	20.7
	도움이 된다	101	41.9
	매우 도움이 된다	81	33.6
최근 1년간 교육참여 여부 (n=241)	없다	61	25.3
	1번	104	43.2
	2번이상	76	31.5
교육필요 여부 (n=24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2	8
	그저 그렇다	24	10.0
	필요하다	86	35.7
	매우 필요하다	129	53.5
아동학대 의심사례 목격 경험 여부 (n=241)	없다	208	86.3
	있다	33	13.7
목적시 신고여부 (n=33)	아니요	7	21.2
	네	26	78.8

2. 주요 변수 기술통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독립변수 중 역할스트레스는 평균 2.16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일-가정갈등 2.43점, 역할갈등 2.11점, 역할보호성 1.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4.55점,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은 2.74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의 평균은 4.10점, 표준편차 .63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요 변수 기술통계분석

구분		MIN	MAX	M	SD	
독립변수	역할 스트레스	역할갈등	1.00	5.00	2.11	.77
		역할보호성	1.00	5.00	1.89	.86
		일-가정갈등	1.00	5.00	2.43	1.13
			1.00	4.93	2.16	.80
아동학대 인식		심각성에 대한 인식	2.91	5.00	4.55	.38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1.00	5.00	2.74	.90
종속변수		아동학대 신고의도	2.13	5.00	4.10	.6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분석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Scheffe)으로 다중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1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 중 연령대($t=4.232, p<.01$), 직업($t=5.945, p<.01$)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M=2.38$), 보육교직원($M=2.49$)이 비교집단에 비해 역할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30대($M=2.38$)가 50대 이상($M=1.87$)보다 역할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또한 보육교직원($M=2.49$)이 초중고 교사($M=2.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M=2.00$)보다 역할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차이분석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n=241)	남	99	2.11	.78	-.789	.431	-
	여	142	2.20	.82			

	20대 ^a	72	2.06	.79			
연령대 (n=241)	30대 ^b	85	2.38	.86	4.232**	.006	d<b
	40대 ^c	49	2.14	.76			
	50대 이상 ^d	35	1.87	.58			
결혼여부 (n=241)	미혼	128	2.11	.82	-1.106	.270	-
	기혼	113	2.22	.78			
자녀유무 (n=241)	무	155	2.20	.84	.957	.339	-
	유	86	2.10	.73			
직업 (n=241)	초중고 교사 ^a	62	2.02	.74	5.945**	.001	a · c<d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2.44	.7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2.00	.74			
	보육교직원 ^d	23	2.49	1.03			
근무기간 (n=241)	1년 미만 ^a	20	2.17	1.04	.815	.487	-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2.25	.77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2.16	.76			
	10년 이상 ^d	57	2.03	.83			

* p<.05, ** p<.01, *** p<.001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차이분석

<표 13>을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역할갈등을 변수로 활용할 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직업($t=3.698,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M=2.45$)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보육교직원($M=2.45$)이 초중고 교사($M=1.94$)보다 역할갈등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2.02	.74	-1.554	.122	-
	여	142	2.17	.78			
연령대	20대 ^a	72	2.09	.85	1.542	.204	-
	30대 ^b	85	2.21	.78			
	40대 ^c	49	2.11	.71			
	50대 이상 ^d	35	1.89	.60			
결혼여부	미혼	128	2.09	.82	-.438	.662	-
	기혼	113	2.13	.70			
자녀유무	무	155	2.15	.81	1.122	.263	-
	유	86	2.04	.68			

	초중고 교사 ^a	62	1.94	.69			
직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2.26	.71	3.698*	.012	a<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2.04	.73			
	보육교직원 ^d	23	2.45	1.09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2.24	.99	1.099	.350	-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2.19	.73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2.07	.75			
	10년 이상 ^d	57	1.99	.76			

* p<.05, ** p<.01, ***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 차이분석

<표 14>를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역할모호성을 변수로 활용할 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t=2.691$, $p<.05$), 직업($t=3.77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M=2.07$), 보육교직원($M=2.35$)인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역할모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보육교직원($M=2.35$)이 초중고 교사($M=1.7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1.78$)보다 역할모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1.79	.78	-1.560	.120	-
	여	142	1.97	.92			
연령대	20대 ^a	72	1.90	.91	2.691*	.047	-
	30대 ^b	85	2.07	.91			
	40대 ^c	49	1.80	.74			
	50대 이상 ^d	35	1.61	.76			
결혼여부	미혼	128	1.90	.89	.044	.965	-
	기혼	113	1.89	.83			
자녀유무	무	155	1.96	.89	1.757	.080	-
	유	86	1.77	.80			

	초중고 교사 ^a	62	1.76	.75			
직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2.03	.81	3.776*	.011	a · c < 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1.78	.85			
	보육교직원 ^d	23	2.35	1.17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2.10	.96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2.01	.82	1.645	.180	-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1.82	.89			
	10년 이상 ^d	57	1.74	.85			

* p<.05, ** p<.01, ***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갈등 차이분석

<표 15>를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일-가정갈등을 변수로 활용할 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t=6.049$, $p<.01$), 직업($t=7.156$, $p<.0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M=2.80$), 사회복지전담공무원($M=2.94$)이 비교집단에 비해 일-가정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30대($M=2.80$)가 20대($M=2.16$)와 50대 이상($M=2.07$)보다 일-가정갈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M=2.94$)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2.15$)보다 일-가정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갈등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2.47	1.12	.433	.665	-
	여	142	2.41	1.14			
연령대	20대 ^a	72	2.16	.97	6.049**	.001	a · d < b
	30대 ^b	85	2.80	1.24			
	40대 ^c	49	2.46	1.13			
	50대 이상 ^d	35	2.07	.88			
결혼여부	미혼	128	2.30	1.09	-1.936	.054	-
	기혼	113	2.58	1.16			
자녀유무	무	155	2.44	1.16	.142	.887	-
	유	86	2.42	1.08			

	초중고 교사 ^a	62	2.30	1.09			
직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2.94	1.21	7.156***	.000	c<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2.15	.97			
	보육교직원 ^d	23	2.65	1.22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2.16	1.31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2.49	1.15	.881	.451	-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2.53	1.04			
	10년 이상 ^d	57	2.31	1.15			

* p<.05, ** p<.01, ***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심각성과 아동학대 신고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차이분석

<표 16>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영역인 아동학대 심각성을 변수로 활용할 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t=6.108, p<.01$), 결혼여부($t=-4.744, p<.001$), 자녀유무($t=-5.165, p<.001$), 직업($t=3.588, p<.05$), 근무기간($t=4.171, p<.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상($M=4.70$), 기혼($M=4.67$), 자녀가 있는 경우($M=4.7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4.62$), 근무기간이 10년 이상($M=4.69$)인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40대($M=4.61$)와 50대 이상($M=4.70$)이 20대($M=4.41$)보다 아동학대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고 교사($M=4.56$)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4.62$)가 보육교직원($M=4.34$)보다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M=4.69$)인 경우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M=4.41$)인 경우보다 아동학대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4.53	.30	-.804	.422	-
	여	142	4.57	.43			
연령대	20대 ^a	72	4.41	.47	6.108**	.001	a<c·d
	30대 ^b	85	4.59	.33			
	40대 ^c	49	4.61	.30			
	50대 이상 ^d	35	4.70	.31			
결혼여부	미혼	128	4.45	.41	-4.744***	.000	-
	기혼	113	4.67	.31			
자녀유무	무	155	4.47	.39	-5.165***	.000	-
	유	86	4.71	.30			
직업	초중고 교사 ^a	62	4.56	.28	3.588*	.014	d<a·c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4.53	.3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4.62	.35			
	보육교직원 ^d	23	4.34	.69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4.41	.53	4.171**	.007	a<d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4.50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4.56	.35			
	10년 이상 ^d	57	4.69	.29			

* p<.05, ** p<.01, ***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표 17>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영역인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을 변수로 활용할 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t=9.549$, $p<.001$), 결혼여부($t=3.919$, $p<.001$), 자녀유무($t=4.370$, $p<.001$), 직업($t=7.392$, $p<.001$), 근무기간($t=2.796$, $p<.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M=3.06$), 미혼($M=2.95$), 자녀가 없는 경우($M=2.92$), 초중고 교사($M=3.03$), 근무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M=2.96$)인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20대($M=3.06$)가 50대 이상($M=2.17$)보다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한 초중고 교사($M=3.03$)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M=2.94$)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2.43$)보다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2.73	.93	-.253	.800	-
	여	142	2.76	.87			
연령대	20대 ^a	72	3.06	.92	9.549***	.000	d<a
	30대 ^b	85	2.82	.78			
	40대 ^c	49	2.57	.92			
	50대 이상 ^d	35	2.17	.77			
결혼여부	미혼	128	2.95	.88	3.919***	.000	-
	기혼	113	2.51	.86			

자녀유무	무	155	2.92	.88	4.370***	.000	-
	유	86	2.42	.83			
직업	초중고 교사 ^a	62	3.03	.87	7.392***	.000	c<a,b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2.94	.8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2.43	.82			
	보육교직원 ^d	23	2.74	1.12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2.52	1.14	2.796*	.041	-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2.73	.80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2.96	.89			
	10년 이상 ^d	57	2.56	.91			

* p<.05, ** p<.01, ***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도 차이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18>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 중 연령대($t=14.276$, $p<.001$), 결혼여부($t=-3.920$, $p<.001$), 자녀유무($t=-4.579$, $p<.001$), 직업($t=6.578$, $p<.001$), 근무기간($t=3.926$, $p<.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상($M=4.48$), 기혼($M=4.26$), 자녀가 있는 경우($M=4.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4.31$), 근무기간이 10년 이상($M=4.35$)인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신고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50대 이상($M=4.48$)이 20대($M=3.76$)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M=4.31$)가 초중고 교사($M=3.90$)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분석

(n=241 / 단위: 명, %)

구분	집단	N	M	SD	t(F)	p	사후검증
성별	남	99	4.07	.60	-.630	.529	-
	여	142	4.12	.66			
연령대	20대 ^a	72	3.76	.77	14.276***	.000	a<d
	30대 ^b	85	4.15	.49			
	40대 ^c	49	4.26	.47			
	50대 이상 ^d	35	4.48	.51			
결혼여부	미혼	128	3.96	.70	-3.920***	.000	-
	기혼	113	4.26	.50			

자녀유무	무	155	3.98	.69	-4.579***	.000	-
	유	86	4.32	.45			
직업	초중고 교사 ^a	62	3.90	.53	6.578***	.000	a<c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61	3.99	.6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c	95	4.31	.57			
	보육교직원 ^d	23	4.08	.76			
근무기간	1년 미만 ^a	20	4.00	.86	3.926**	.009	-
	1년 이상 ~ 5년 미만 ^b	89	4.05	.65			
	5년 이상 ~ 10년 미만 ^c	75	4.01	.65			
	10년 이상 ^d	57	4.35	.41			

* p<.05, ** p<.01, *** p<.001

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표 19>와 같다. 독립변수 역할스트레스의 하위 3개 영역과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연구의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r)는 절댓값이 .002 - .874 범위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역할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r)는 -.02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독립변수 역할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역할갈등, 역할보호성, 일-가정갈등 3개의 영역과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인 신고의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종속변수인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r)가 .490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종속변수인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r)가 -.518이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인 역할스트레스와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역할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역할보호성만 근무기간($r = -.140, p < .05$)과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들과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r = .250, p < .01$), 결혼여부($r = -.289, p < .01$), 자녀유무($r = -.296, p < .01$), 근무기간($r = .220,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들과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r=-.325$, $p<.01$), 결혼여부($r=.245$, $p<.01$), 자녀유무($r=.268$, $p<.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신고의도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r=.375$, $p<.01$), 결혼여부($r=-.241$, $p<.01$), 자녀유무($r=-.255$, $p<.01$), 근무기간($r=.162$, $p<.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9> 주요 변수 상관관계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역할스트레스	1											
2. 역할갈등	.862**	1										
3. 역할모호성	.862**	.769**	1									
4. 일-가정갈등	.874**	.564**	.579**	1								
5.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128*	-.180**	-.175**	-.026	1							
6.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233**	.194**	.224**	.194**	-.278**	1						
7. 신고의도	-.024	-.035	-.043	.004	.490**	-.518**	1					
8. 성별	-.051	-.100	-.100	.028	-.049	-.016	-.041	1				
9. 연령대	-.069	-.077	-.118	-.014	.250**	-.325**	.375**	.047	1			
10. 결혼여부	-.071	-.028	.003	-.124	-.289**	.245**	-.241**	-.010	-.626**	1		
11. 자녀유무	.062	.069	.109	.009	-.296**	.268**	-.255**	.094	-.604**	.793**	1	
12. 근무기간	-.085	-.115	-.140*	-.004	.220**	-.002	.162*	.115	.498**	-.386**	-.420**	1

* p<.05, ** p<.01, *** p<.001
성별(남=1), 결혼여부(미혼=1), 자녀유무(자녀없음=1)

5. 다중회귀분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통제변수와 역할스트레스 하위변수, 아동학대 인식을 투입하여 분석해 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8.852$, $p<.001$), $R^2=.450$ 으로 45.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9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이었으며,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TOL, 허용도)는 0.1이상으로 확인되어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 연령대($\beta=.230$, $t=3.250$,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beta=.372$, $t=6.883$, $p<.001$),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beta=-.409$, $t=-7.28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인식 중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계수를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beta=.372$)보다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beta=-.409$)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신성 통계량		F(p)	R ² (adj. R ²)
	B	표준오차	β	β			TOL	VIF		
(상수)	1.380	.485			2.848	.005				
성별	-.042	.065	-.033		-.642	.522	.914	1.094		
연령대	.142	.044	.230		3.250**	.001	.478	2.091		
결혼여부	.147	.111	.116		1.331	.184	.312	3.205		
자녀유무	.023	.114	.018		.205	.838	.320	3.125		
근무기간	.026	.041	.038		.630	.529	.659	1.517	18.852	.450 (.427)
역할 스트레스										
역할갈등	.039	.065	.047		.599	.550	.381	2.625		
역할모호성	.061	.059	.083		1.029	.304	.367	2.728		
독립변수										
일-가정갈등	.020	.036	.036		.568	.571	.590	1.696		
아동학대 인식										
심각성에 대한 인식	.617	.090	.372		6.883***	.000	.817	1.224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289	.040	-.409		-7.287***	.000	.759	1.318		
종속변수: 신고의도	Durbin-Watson									2.191

* p<.05, ** p<.01, *** p<.001
성별(남=1), 결혼여부(미혼=1), 자녀유무(자녀없음=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요약 및 결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중심으로 역할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할스트레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약 한달 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ver.2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성이 58.9%(142명), 남성은 41.1%(99명)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29.9%(72명)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가 46.9%(113명)였으며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는 64.3%(155명), 자녀가 있는 자는 35.7%(86명)이었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9.4%(9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 ~ 5년 미만이

36.9%(89명)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92.9%(224명)가 신고의무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 중 73.4%(177명)가 아동학대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5%(18명)는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1년간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조사대상자는 25.3%(61명)이었다. 신고의무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75.5%(182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러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215명)이었다. 조사대상자 241명 중 13.7%(33명)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78.8%(26명)가 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역할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16점이었으며 역할스트레스의 3가지 하위요인 중 일-가정갈등의 평균은 2.43점으로 다른 하위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평균은 4.55점,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평균은 2.74점, 아동학대 신고의도 평균은 4.10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스트레스는 연령대,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30대가, 보육교직원이 비교집단에 비해 역할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역할갈등은 직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교직원이 비교집단보다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역할보호성에서는 연령대와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0대가, 보육교직원이 비교집단보다 역할보호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하위변수인 일-가정갈등을 변수로 활용할 때에도 연령대와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0대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가정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기간이 긴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초중고 교사, 근무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자가 비교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신고의도는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근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50대 이상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신고의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독립변수인 역할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으며 이는 허남순(2003), 김수정(2012), 장준혁(2019)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윤경(2004)와 김준미(2006)과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신고의무자의 역할스트레스의 3가지 하위요인들은 신고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역할스트레스가 높으면 사고예방의식이 낮다고 판단되나(신용숙, 2016),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2. 제언 및 한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신고행동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신고자는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신고 후에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의 부담감을 덜어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가해자의 보복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효과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이며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가지고 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여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단순히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징후나 지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고의도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불안감이나 부담감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초중고 교사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과 동시에 신고 저해요인의 인식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표준화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보다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이 신고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심각성을 인지했다더라도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생각이 크다면 신고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바람직하고 어려운 행위가 아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신고의무제도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8개 직군 중 초중고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나온 요인들이 전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설문 방식인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 가지 직군을 정하여 심층 면담 방식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과 학대 방지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신고의도가 곧바로 미래의 신고행동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향후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낮은 신고율은 이러한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라는 다소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할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상·유수정. 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지』. 18(4): 145-165.
- 강영욱·채신영. 2021.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지』. 21(2): 315-329.
- 강혜련·임정희. 2001. “성취동기와 가족친화제도가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조절변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14.
- 고혜인. 2020.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혜인·김성봉. 2019.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감성과학회지』. 22(2): 3-16.
- 곽신근. 2010. “윤리적 리더십이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 2015. “치매지원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2018.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리원. 2021. “대학생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및 신고의도 영향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성. 2021. “영유아교사의 조절초점 성향과 인권 감수성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 2015. “보육교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소진, 아동학대 관련요인 연구”. 『한영논총학술지』. 19: 107-127.
- 김민재. 2022. “역할스트레스가 재택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2. “역할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은. 2020. “사회복지사의 역할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인. 2017.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예비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2.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희. 2017.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 2016. “역할보호성과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0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식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2005.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재. 2018.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교육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인식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 201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배. 2022.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미. 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과 신고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운·김용덕. 2019.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결정 경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425-436.
- 김진선·박경숙. 2005.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2): 211-220.
- 김현옥. 201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신념 관련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1: 5-32.

- 김혜정. 201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아동학대 인식 및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 2012.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 『사회과학연구논총』. 27: 72-106.
- 도명애. 2010.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한국특수교육학회지』. (3): 147-179.
- 마지순. 2019.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325-331.
- 박동연. 2012.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에 따른 신고의무 태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김현주. 2018.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 요인”. 『한국아동권리학회지』. 22(2): 127-144.
- 박미숙. 2020.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09.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0.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서윤경. 200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진희. 2016.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주의집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준화. 200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숙. 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 2002.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리아. 20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인식이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자.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안숙. 2008.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현. 2006. “남자 중학생의 스포츠 참여가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 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귀진.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2020. “기혼교사의 일·가정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 배우자 지지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배. 2018.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긍정정서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 2012. “역할스트레스를 지각한 작업자의 자기욕구 및 자기신념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숙. 20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보호성과 조경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수. 2017. “활동보조인의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정. 2021.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인순. 2017.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태도와의 관계”.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윤. 2004. “직무 특성과 직장-가정간 갈등이 조직에 대한 애착 및 조직시민

- 행동에 미치는 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17(1): 107-127.
- 장준혁. 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 2023.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경험” .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사회.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육교사와 장애통합교사의 인식”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형 · 류주현. 20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가정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11(7): 337-344.
- 정미영. 2017.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언. 200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적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인사관리학회지』 . 26(1): 89-112.
- 정원주. 2009.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의도 배제원인 분석” . 『한국가족복지학』 . 27: 133-152.
- 정채옥. 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 30: 298-325.
- 정현대. 202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선. 2003.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순. 20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사회적자본이 신고인식과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영숙 · 문혜련. 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58): 61-80.
- 차은민. 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윤경. 2016. “취약계층대상 아동복지종사자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진. 2018.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역할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일. 2011.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청소년 복지학회』. 13(1): 27-46.
- 최선아. 2018. “고용의 질이 유자녀 기혼여성노동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민. 2016. “역할스트레스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LMX-TMX의 조절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주. 2016. “조직내 역할요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 2022.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발생원인, 개선방안 인식 차이”.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연. 2020.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옥.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아동교육학회』. 24(3): 329-345.
- 허남순.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3(0): 209-230.
- 김보수. 2012.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갈등 및 역할보호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연. 2021.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shton, V. 1999. “Worker judgement of seriousness about and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3(6): 539-548.
- Crenshaw, W.B. & Lichtenberg, J.W. 1995. “When Educators Confront child Abuse; an Analysis of The Decision to Report”. 『Child Abuse & Neglect』. 19(9): 1095-1113.
- Gil, D. G.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Physical Child Abuse in the

-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 45(3): 346-356.
- Gould, Travis J. 2005. “Measuring and modeling exposure from environmental radiation on tidal flats” . 『Nuclear Instruments &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 』 . 537(3): 658-665.
- Greytak Emily A. 2009. “Are Teachers Prepared? Predictors of Teachers ‘ Readiness to Serve as Mandated Reporters of Child Abus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eng Jui Ying.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octoral Dissertation.
- Fontana, V. J. 1970. “The Malteated Child: The Maltreatment Syndrome in Children” . 『A Medical, Legal and Social Guide』 . 4: 7-192.
- Liu&Lau. 1999. “Conceptualization, 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In HongKong” . 『Child Abuse&Neglect』 . 23(11): 1159-1174.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 『Health Education Monographs』 . 2(4): 354-386.
- U.S. Department of Health&Human Services. 2020.

< Abstract >

The Effect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s
Role Stress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on
the Intention to Report

Kang, So 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prevent child abuse by checking how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s role stress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affect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o achieve this aim, 241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teachers, social welfare public officials,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nd child care teachers who ar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were survey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s there any difference of the role stress, th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he obstruction of child abuse report, and the intention to report the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Secondly, does the role stress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affect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irdly, does the awareness about the child abuse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affect on the intention to report cases?

To research and verify the subjects, we collected and analyzed 241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program(Ver. 21.0). The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the role stress, the awareness and the intention to repor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eatures of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s intention to repor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ole stress of the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are the age and the job.

Secondly, th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abuse report failure causes differs according to the age, the job, the marital statu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children and the career.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differs meaningfully according to the age, the job, the marital statu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children and the career.

Thirdly, when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main variables, the relevant correlation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role stress and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and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bout the factors that obstruct reporting child abuse and the intention to report it.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s a policy suggestion, the reporter confidentiality must be

prioritized and the legal measures to protect from the retaliation and the blame must be strengthened. Secondly, As a practical sugges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at the higher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showed the higher intention to repor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education to raise th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lso Many people are hesitant to report child abuse due to the burden that follow the reporting. Therefore the supporting environment which make the reporting easier is needed. If we make the momentum for recognizing that child abuse mandated report is desirable and is not difficult act,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is expected to be greatly invigorated.

Key Words: Child Abuse Mandated Reporter, Role Stress, Child Abuse Recognition, Intention to Report

설문지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강소윤 (010-5579-8957)

본 연구에 필요한 귀하의 설문 응답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동의란에 체크(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역할스트레스】

다음은 귀하의 직장내 역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번호	설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01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02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서 정한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03	나의 판단과 상반된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04	나는 모순된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05	나는 애매한 지시나 명령을 받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06	나의 업무과제나 목표가 불명확하다.					
07	나의 책임한계는 불명확하다.					
08	나의 업무가 전체적인 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09	내가 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다.					
10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					
11	업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의 일에 소홀하게 된다.					
12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몹시 피곤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렵다.					
13	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정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4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동학대 심각성】

다음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사례에 열거된 양육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한 학대라고 여기시는지 각각의 사례별로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문항 번호	설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01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등 신체를 때리는 경우					
02	발로 차거나 깨무는 경우					
0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04	“꼴보기 싫다”,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					
05	“나가 죽어라”, “갓다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					
06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경우					
07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08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경우					
09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10	아동이 거부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경우					
11	억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

다음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번호	설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01	아동학대의 정도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망설여진다.					
02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진다.					
03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신고하는 것이 귀찮다.					
04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					
05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 생각한다.					
06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07	신고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08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봐 두렵다.					
09	신고를 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부담스럽다.					
10	신고를 함으로써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사례를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p>사례 1.</p> <p>귀하는 9세인 동네 아동의 손바닥과 다리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유를 물었을 때, 아동은 “집에 가서 숙제는 하지 않고 친구 집에 놀러 갔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 차례 아동의 손바닥과 다리를 때렸다고 한다. 아동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마다 이렇게 때린다고 말했다.</p>					
<p>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p>	①	②	③	④	⑤

<p>사례 2.</p> <p>임신 5개월인 20세인 여성은,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 오른 19개월 된 아동을 데리고 왔다. 아동은 골절된 갈비뼈가 회복되고 있었다. 아이 엄마는 아동이 울자 화가 난 아버지가 아동을 때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p>					
<p>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p>	①	②	③	④	⑤

<p>사례 3.</p> <p>부모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아동의 학업성적을 자주 비교하고 아동이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부모는 아동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할 때마다 비웃거나 비난했다. 그 아동은 약간의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p>					
<p>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p>	①	②	③	④	⑤

<p>사례 4.</p> <p>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6세 아동은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컵을 깬다. 그리고</p>					
---	--	--	--	--	--

그 때문에 매우 슬프다고 귀하에게 털어 놓았다.
 아동은 아빠가 자신에게 “너는 쓸모없고 결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은 아빠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엄마는 아빠가 아동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	---	---	---	---

사례 5.
 부모는 여러 차례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아동)를 보여주었다.

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	---	---	---	---

사례 6.
 부모는 끊임없이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10개월 된 아동을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었다.
 선생님이 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아동은 심한 탈수증세를 보였다.

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	---	---	---	---

사례 7.
 부모는 9살 아동을 어두워진 후에 혼자 집에 두고 자주 나간다. 종종 그들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때때로 그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기도 한다.

귀하께서는 이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할 것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	---	---	---	---	---

【기본사항】

개인적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사에 중요한 내용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0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03. 귀하의 결혼 여부는?

- ① 미혼 ② 기혼

03-1. 귀하의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_____명

04. 귀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 ② 초·중·고 교사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⑤ 기타 ()

05.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은 어느정도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06. 귀하께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06-1 문항) ② 아니요

06-1. 그 때, 외부기관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